

제405회 정례회
'22. 12. 6.(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일

3. 제안사유

- 우리사회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조차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 충북도에서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칭)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여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고자 함.
-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착한은행 설립과 병행하여 2023년도에는 금융기관의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여하고,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회수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임.
- 이에 금융기관의 채무보증 요청에 따라 의료취약계층의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미상환금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금융기관(농협)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
- 채 권 자 : 농협은행(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 주채무자 :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받은 도민*
 -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 용자금액 : 25억원(농협정책자금)
- 용자조건 : 1인 300만원 한도 / 3년 무이자 분할상환
- 보증기간 :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 보증범위 :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
(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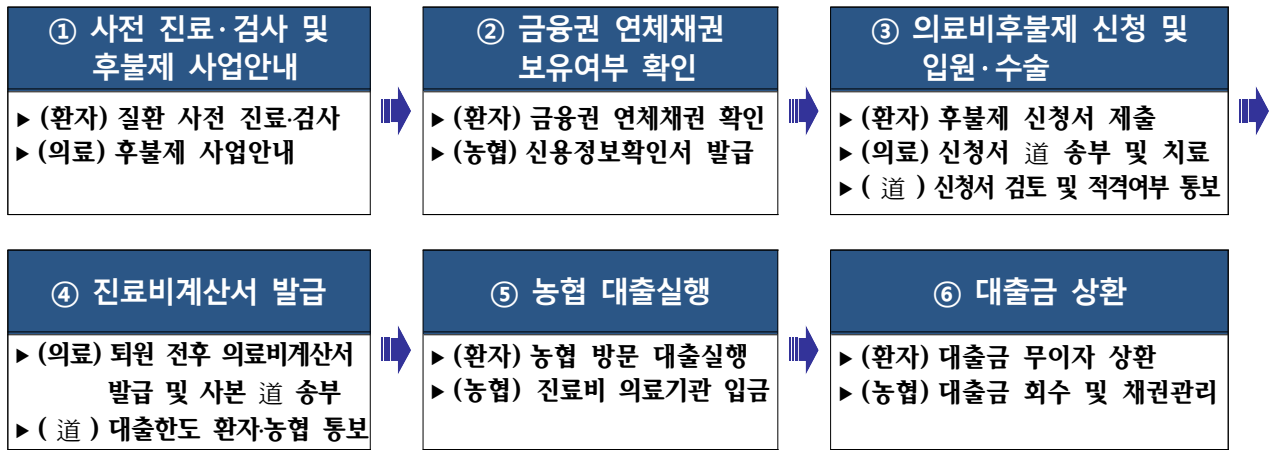
가. 제출배경

- 본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대여하고,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하는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고자 충청북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동의안의 사업대상은 65세 이상인 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112,358명*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1,915명, 차상위계층 10,311명, 보훈대상자 19,937명, 장애인 50,195명
-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구성하고, 대출한도는 1인 50~300만원, 사업량은 최소 830명, 최대 5,000명이고, 3년간 무이자 상환함.

○ 의료비후불제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제2항에 따른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 본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질병치료를 받아 삶의 질 향상과 기대수명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다만, 시범사업이므로 향후 사업 확대 운영 시에는 사업 지속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향후 착한은행 설립에 있어서는 재원마련, 설립절차 이행 등 면밀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